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56호

다. 제출일자 : 2014. 9. 4.

라. 회부일자 : 2014. 9. 5.

2. 제안사유

- 국토교통부의 자치단체 위임규제 관련 개선 요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삭제

3. 주요내용

-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대체한다는 내용 삭제(제5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 없음

라. 입법예고

○ 기 간 : 2014. 6.12 ~ 7.2

○ 제출의견 : 없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¹⁾을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국토교통부 정비의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의 교육에 대하여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교육 외에 시장이 필요하여 추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2. 보수교육 3. 수시교육

[별표 4의3]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

1. 교육의 종류 등

구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가. 신규교육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16	
나. 보수교육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수시
다. 수시교육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 시

나. 동 단서조항에 대한 경과 사항

-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조항은 주요 사업구역이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는 택시 및 시내·마을버스 등과 달리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보수교육 일정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교육기관 다변화를 통한 운수종사자의 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13년 8월 신설된 것임²⁾
- 해당 조항 신설 당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 고문들은 동 조항 신설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³⁾ 서울시장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다양화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실효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안동의 한 바 있음⁴⁾
-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조항이 신설된 지 1년여가 지난 '14년 9월 국토교통부의 자치단체 위임규제 개선요청⁵⁾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음

다. 검토의견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교육을 받되 시·도지사는 동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⁶⁾

2) 채재선 의원 외 17명 발의

3) 2014년 11월 17일

4) 택시물류과-18146(2013.6.26.)

5) 자치단체 위임규제 관련 개선 요청【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149(2014.01.13.)】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1항 및 제3항

※ 참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교통안전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례 단서조항이 관련 법령을 위배하고 있는 지에 대해 서울시의회 입법자문결과와 서울시의 자문결과 내용이 상이한 바,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별첨 참고】

다만, 서울시 법률자문 결과는 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연수기관 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임에도 운수종사자 교육을 대체하도록 한 단서조항이 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단서 조항을 연수기관 지정 사항으로 보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 또한 현행 단서조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운수종사자의 경우 기존 보수교육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점에서 신설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할 것임

【별첨】 단서 조항에 대한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자문결과

구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해석관련	교육의 대체 관련
서울시의회 법률자문결과 (’14년 11월)	이00	법 제25조에서 연수기관을 지정하는 방식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례로 교통안전법상 교육을 대체하도록 한 것은 <u>조례 제정권 범위에 있음</u>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교통안전법의 교육목적은 안전운행을 포함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음</u>
	박00		
서울시 법률자문결과 (’14년 12월)	법무법인 00	법 제25조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것은 “연수기관의 설립 및 지정”인 점을 고려할 때 조례에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u>법의 명문 규정에 위반됨</u>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교통안전법의 교육목적에는 차이가 있어 <u>대체할 수 없음</u>
	법무법인 00		